



의안번호

제117호

##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9. 9. 11.

#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

의안  
번호 제117호

제출연월일 : 2019. 9. 11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94조에 따른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하고자 「지방 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【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요】

- 연 혁 : 2011년도 설립된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운영기관
- 설립목적
  - 지방재정 분권실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 수행
  - 자치단체의 교육, 홍보,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한 사업추진
- 위 치 : 서울시 서초구 소재
- 현 황 : 원장(공석), 현원(65명)

### 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  - ※ 연구원 운영예산 2019년도 13,163백만원중 82.4%를 지방자치 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됨

□ **출연계획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			2020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시비(100%)	8,685	8,685	0	8,852	167

※ 산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  
 - ' 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9,011,849천원 × 1.5/10,000 = 8,852천원

□ **기대효과**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# 참고 1

# 한국지방세 연구원

설립근거	법 률 : 지방세기본법151조				전화번호 : 02-2071-2798		
	시행령 : 조 례 :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- 출연		
인원현황 (2019년 6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65명 (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, 파견인력 제외)		65명 (11명) *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원직 (지자체 임원 등)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( ) 로 표시 ※ 예 : 12명 (4명)		-명 (기간제,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)		
임 원 (2019년 6월 현원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 사 장	허 성 관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2017.12. 22. ~ 2020.12. 21.		
	부이사장	황 명 선	충청남도 논산시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원 장		공 석		3년		
	이 사	이 용 철	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		당 연 직		
	이 사	김 하 균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이 용 석	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김 기 세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김 장 호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박 상 신	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김 향 섭	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윤 여 일	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		2019. 2. 28. ~ 2020. 2. 27.		
	이 사	금 재 덕	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2019. 2. 28. ~ 2021. 2. 27.		
	감 사	김 영 빈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 연 직		
	감 사	노 홍 래	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		2018. 2. 28. ~ 2020. 2. 27.		
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68,756 (설립이후 2019년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'18.12.31기준	자산	18,188 (자산 총액)
	예산액	9,986	13,718	13,163		부채	4,457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9,551	12,102	10,843		자본	13,731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8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11,196				8,634		2,562

**지방세기본법**

[시행 2018.1.1.] [법률 제15291호, 2017.12.2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지방세정책과), 02-2100-3597

**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**지방세기본법 시행령**

[시행 2018.1.1.] [대통령령 제28523호, 2017.12.29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지방세정책과), 02-2100-3597

**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**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

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18.3.27.] [법률 제15309호, 2017.12.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06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